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파인」 (fine.fss.or.kr)으로 검색하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경제
양극화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보 도 자 료		
	보고	2016. 11. 15.(화) 조간	배포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3145-8129), 박상욱 선임조사역(3145-8155)
------	---------	---

제 목 :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업체에 주의하세요!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과제]

1 배 경

□ 최근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

* 수사기관 통보 건수 : '15년 4개 → '16년 7개

○ 약정서, 가입증서 등을 작성케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 등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현혹

☞ 마치 은행 상품과 같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투자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필요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및 수사통보 건수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1 ~ 10	
						1 ~ 10	
신 고	..	181	83	133	253	194	445
수사통보	48	65	108	115	110	62	114

2 예·적금 상품 등을 사칭하는 유사수신업체의 특징

- ◎ 제도권금융의 예·적금 상품 등과 유사하게 투자원금 및 고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현혹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 * 이들 업체 대부분은 사업실체가 없으며,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

1 예·적금형 금융상품 형태로 거짓 선전

-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도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유인
 -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로 조만간에 정식 인·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하며 약정이율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

< A업체, B업체 사례 >

- ① (A업체) 대표 ㄱ씨는 00조합을 만들고, 주유소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며 자신들에 투자하면 원금의 보장과 1년 약정 10.5%, 2년 약정 12%(2년 24%)의 고수익을 약정하며, 금융회사와 동일한 적금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만기시 원금보장과 약정한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약정과 다르게 돌려주지 않고, 투자 후 6개월이 지나면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다른 상품에 투자했다며 상환하지 않아 피해 발생
- ② (B업체) 대표 ㄴ씨는 150억원의 자산가라며 향후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고 회원이 되면 매주 3%씩 지급하여 1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개시되면 더 높은 수익을 준다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모집

②

원금보장 계약서 및 공증서를 허위 발행

-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 선전
 - 이 과정에서 금융전문가, 재무전문가 등이라면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음

< C업체 사례 >

- ① (C업체) 금융업 등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무인가업체로서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면서 토탈금융서비스 “금융투자 재테크*”를 통해 원금이 보장되면서 45일만에 3%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고, 원금보장의 확약으로 계약서, 공증서, 어음을 발행해주면서 안심시키고, 특히 150여명의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 블록딜, 자산관리, 부동산투자, 미술품 투자 등

③

글로벌 외국기업 등의 지급보증 사칭

- 글로벌 금융관련 기업으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전혀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고 허위 주장
 - 외국 유수 투자은행의 안정적 자산으로 운용함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거짓 광고

< D뱅크, E업체 사례 >

- ① (D뱅크) 스리랑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글로벌 회사 D뱅크가 한국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인터넷은행 설립 조건이 회원 3만명 이상 되어야 허가를 받는다며 1구좌(1만불)을 투자하면 15개월에 228% (원금100%+수익128%)의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고, 뉴질랜드에 소재한 세계적인 기업 OO이 보증한다고 주장하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으고 있음

- ② (E업체) 대표 ㄷ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한다며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확실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안정자금에 투자해 자금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는다며 전국 각지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나, 투자는 커녕 돌려막기로 투자수익과 모집수당을 지급

3 소비자 유의사항

- (투자시 절대유의)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체가 없음에도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융업을 위장하여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농후
 - 유사수신 업체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
-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나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속지 않도록 유의
 -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음을 유의
 - *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거나, ② 금감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 접속 →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리금이 보호되는 상품인지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 **(유사수신 신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
 - 신고포상금이 건당 최고 1천만원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립니다

- **(정보수집 활동 강화)** 금감원은 앞으로도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填)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딧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

제6조 (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